



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,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

장동식 수석연구원

요약

-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(NAIC)는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제도(ORSA)에 대한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. 이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. 왜냐하면 현재 보험회사는 정기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서 개별적이지만 ORSA 개념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. 협의회는 모델 법 제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, 리스크 중심 감독,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음. 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종합적, 체계적으로 ORSA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.

-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(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, 이하 'NAIC'라 함)는 최근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(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, 이하 'ORSA'라 함)에 대한 모델 법 제정¹⁾을 검토하고 있음.

- NAIC는 지급능력관련 국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SMI(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음.
 - 이를 통해 위험 중심 자기자본,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, 그룹 감독, 감독회계 및 재무 보고, 재보험 등을 검토함.
- NAIC는 ORSA를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였고, 이에 기초하여 가이드라인(2011. 12월) 및 매뉴얼(2012. 3월)을 제정함.
- 최근에는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러한 가운데 NAIC 내 재무건전성 소위원회(Financial Condition Committee)는 모델 법 제정안을 2012년 9월에 채택함.

1) NAIC는 모델 법 등을 제정하여 주 보험감독당국에 권고하고, 주 보험감독당국은 NAIC에서 권고한 모델 법 등을 주 보험 법 등에 반영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음.

■ NAIC가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ORSA는 위험 중심 자기자본 제도(RBC 제도)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국제보험감독협의회(IAIS) 및 유럽연합(솔벤시 II)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임.

- 감독당국은 위험 중심 자기자본 제도인 RBC 제도를 통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-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RBC 제도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상정하기도 하고, 또한 RBC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리스크(예: 평판리스크)를 관리하기도 함.
-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RBC 제도와는 다른 평가기간(예: 경영계획 기간)을 설정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.

〈표 1〉 미국 RBC 제도와 미국 ORSA 모델 법 제정안 비교(양적 측면)

구분	RBC 제도	ORSA 모델 법 제정안
리스크	감독당국 요구 리스크	보험회사 내 모든 리스크
평가기간	1년	중장기(경영계획 기간)
평가모형	감독당국 제시 평가모형	회사 자체 모형
대상	모든 보험회사	대형사 또는 그룹
신뢰수준	감독당국 요구 신뢰수준	회사 목표 신뢰수준

■ ORSA는 RBC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위험관리 및 자본적정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, 지급여력 상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함.

- 현재 미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.
 - 현장검사 시 감독자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회 기능 및 활동, 승계계획(succession plan), 공식적인 위험관리의 부재, 내부 감사 기능의 실패 등을 검사하여야 함.
- NAIC가 추진하고 있는 제정안이 확정되면 감독당국은 현장검사 외에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정책, 위험 노출규모 및 장래 지급능력 등을 상시적으로 ORSA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.

■ NAIC의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정책, 위험노출규모 및 장래 지급능력 평가 등을 수행하고, 이를 요약한 ORSA 보고서도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.

-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정책(투자정책, 보험영업정책, 사기방지 정책, 자산부채관리 정책, 보유 정책, 재보험 거래상대방 정책 등)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함.

- 보험회사는 감독목적의 지급여력을 계상하는데 감안한 리스크와 기타 중요 리스크(예: 평판리스크)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함.
- 보험회사는 정상상황 및 비정상상황 모두를 가정하여 위험 노출규모를 평가하고, 또한 경영계획하에서의 장래 지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.
 - 회사의 리스크 및 지급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수단을 활용하여 리스크 및 지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.
-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ORSA 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.

■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본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.

-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에서 감독요건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, 게다가 ORSA에 반영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.
 - 이에 보험회사는 보유 위험 및 준비금과 감독요건 상 위험 종류 및 준비금을 비교한 정보 등을 감독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함.
-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.
 - 이에 보험회사는 장래사업 및 경영행위의 자본효율성을 파악하고, 이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감독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함.
-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보험회사와 교환하고,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함.

■ 이와 같은 NAIC의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안은 효과적인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한 보험회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- 제정안에 따르면 ORSA는 보험료 기준(개별: 5억 달러 이상, 그룹: 10억 달러 이상)을 충족시키는 회사만 적용됨.
- 보험회사가 ORSA 관련 개념들을 현행 정기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개별적이지만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기존 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ORSA를 실시할 수 있음.
-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들은 법 제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다만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은 ORSA 실행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인하고, 그 과정에서 파악된 개선사항들을 위험관리 체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NAIC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종합적, 체계적으로 ORSA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
-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제도(CAMEL)와 위험평가제도(RAAS)를 통합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에서 NAIC의 ORSA 내 핵심항목 대부분을 점검하고 있음.
-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한 감독당국의 점검은 NAIC가 ORSA를 도입하기 이전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.
- 이 같은 상황은 미국 NAIC가 ORSA 관련 가이드라인, 매뉴얼, 모델 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 이전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. [kiri](#)